

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045
------	------

2016. 3. 3.
기획경제위원회

I 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년 2월 25일, 권미경의원의외 9명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2월 26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】

-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(2016.3.3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의결(원안가결)

II . 제안설명의 요지(권미경의원)

- 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몰 규정 삭제를 통하여 체계적인 노동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가. 개정안의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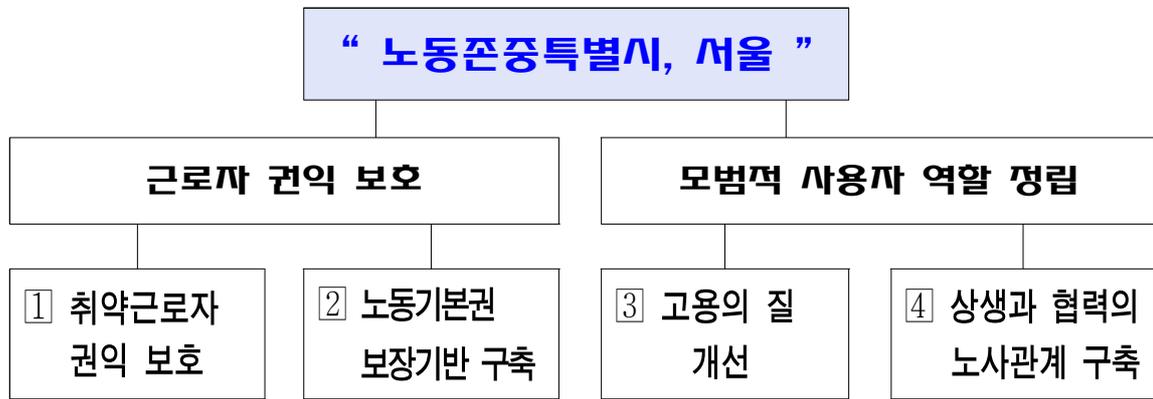
- 「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는 제정 당시 「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지침」에 따라 “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”의 존속기한을 조례의 시행일('14.3.20)로부터 2년(2016년 3월 19일자로 그 시한이 도래 예정)으로 부칙에 명시하고 있음.
- 이같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년으로 둔 것은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, 위원회 운영 이후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‘위원회 운영지침’에 따른 조치임.
- 이에 개정안은 ‘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’의 상설화 필요성에 따라 부칙에 명시된 일몰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체계적인 노동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.

나.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운영

- 서울시(이하 “시”)는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일터에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‘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’을 수립('15.4.29)·시행하고, 서울을 노동존중특별시로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음.

-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“노동존중특별시, 서울”을 비전으로 근로자 권익보호와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의 2대 정책목표와 61개 단위과제로 구성된 ‘서울시 5개년 노동정책기본계획’을 발표했으며, 2015년 519억원의 예산을 포함하여 2019년까지 총 2,852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있음<참고자료2>.

<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정책 비전 및 목표 >



- 또한, 시는 노동교육, 고용안정 강화, 적정임금보장,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, 노사상호존중, 노동행정조직 보강 등,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“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”(이하 “근로자권익보호 위원회”)를 운영하고 있음.
-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는 2014년 3월 「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)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노동정책 기본계획(안)이 마련된 2015

년 2월 이후 설치되었음.1)

〈 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현황 〉

- 운영근거 : 「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
- 구성일 : 2015년 4월 10일
- 임 기 : 2년 ('15.4.10~'17.4.9) ※1회 연임가능
- 기 능
 -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·자문
 -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·자문
 -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, 정책에 대한 자문
 -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
- 개최실적 : 2015년(1회)

- 그러나 동 조례 제18조2)에 따라 반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5년 구성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만 개최된 것은 시가 노동정책에 대한 플랜과 구호만 있을 뿐 확고한 실천의지가 부족한 단면이라 할 수 있음.
- 이 같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'노동행정'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'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'을 수립한 만큼, 향후에는 이러한 계획과 그 목적에 맞는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.

1) 노동정책 기본계획 추진 일정

「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 제정('14.3) → 노동정책 기본계획(안)마련('15.2) → 사회적 합의과정 이행('15.3.18) →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('15.4.10) →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('15.4.20) → 노동정책 기본계획 시행('15.5~)

2)제18조(회의)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다. 위원회 존속기한의 폐지(안 부칙 제2조)

-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는 시의회, 시민단체, 노동단체 등 관련자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노동계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노사정간의 실질적인 협의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함.
- 또한,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 및 성과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, 이를 바탕으로 노동정책을 보완·발전시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걸맞은 위상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.
- 아울러, 표면적인 근로자 보호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정책을 실천하고,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인 “노동존중특별시, 서울”을 추진하기 위해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상설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<제5664호, 2014.3.20.> 제2조를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칙 <제5664호, 2014.3.20.> 제1조(시행일) 생략 제2조(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존속기한)	부칙 <제5664호, 2014.3.20.> 제1조(시행일) 생략 <삭 제>
<u>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</u> <u>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,</u> <u>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</u> <u>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</u>	